제422회 정례회
’24. 11. 28.(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종필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3. 제안사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충청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지정 취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장애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등록장애인(2,641,896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54.3%(1,425,095명)로 나타나, 지난 2020년 49.9%에 비해 증가하며 고령화 경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1]을 갖고 있어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건강검진율도 격차[2]를 보이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참고 1 >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구 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등록장애인	2,519,241	2,494,460	2,545,637	2,623,201	2,641,896
65세 이상 장애인구	38.8%	43.3%	46.6%	49.9%	54.3%

자료 : 보건복지부 발표 (2024. 4. 30.)

< 참고 2 > 충청북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

1)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4. 4. 30.)
: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 보유율 84.8%, 평균 2.5개의 만성질환 보유
-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2)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비장애인보다 10%P 낮아'(동아일보, 24. 9. 26.)
: 2023년 **장애인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66.5%,** 비장애인 수검률 76.4%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명)
지체	43,778
시각	8,702
청각	14,251
언어	713
지적	11,177
뇌병변	8,203
자폐성	1,155
정신	3,682
신장	3,519
심장	141
호흡기	333
간	520
안면	92
장루・요루	624
뇌전증	227
합계	97,117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2023년 말 기준

○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조례안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책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건강 수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

< 참고 3 > 타 시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	규정 및 지침명	제·개정일
1	경남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21. 8. 5. (제정)
2	경기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23. 7. 18. (일부개정)
3	경북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23. 2. 23. (제정)
4	충남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24. 4. 5. (일부개정)
5	서울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9. 9. 26. (일부개정)
6	부산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8. 5. 23. (제정)
7	대구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8. 12. 31. (제정)
8	광주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2024. 8. 7. (일부개정)
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8. 3. 15. (일부개정)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23. 6. 9. (일부개정)
11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2023. 12. 8. (일부개정)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본 조례안의 정의 규정은 집행 과정상 명확성과 법 체계성을 위해

상위법상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켰으며, 이를 통한 시책 추진상 혼선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짐.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본 조항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건강권 존중 및 보호, 실현과 관련한 책무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 ▲장애인 개인별 소득과 교육수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건강위협 상황의 예방 대책 수립·시행,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대한 적극 홍보와 ▲인식개선 정책 실시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그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됨.

○ **도민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본 조항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충청북도민의 의무로 명시함.

  이를 통해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관련 사업들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충북을 포함한 6개 시·도는 시행(종합)계획 수립을 ‘매년’하도록 명시하였고, 경남을 포함한 5개 시·도는‘5년마다’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매년	5년마다	시행계획 조항 없음
충북, 경북, 충남,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경기, 광주, 제주, 전북	강원

- 시·도는 법 제6조[3]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제4조제2항제4의2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함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과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함.

---

3)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이는 법 제7조[4]와 제8조[5], 제9조[6], 제13조[7]와 제14조[8], 제15조[9], 제16조[10]와 제17조[11]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강검진사업, ▲건강관리사업, ▲의료접근성 보장 사업, ▲건강교육 사업,▲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각 사업들의 수행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지정 취소, 지도·감독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

4)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5)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6)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7)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8)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9)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10)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1)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8조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와 안 10조는 안 제8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센터 지정 및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부정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의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음.

- 충북의 경우, 지난 2021년 7월 '충북대학교병원'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돼, 2022년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고, 올해 예산으로 5억 4,600만 원(국비 50%, 도비 50%) 가량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 대상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공보건 의료기관 및 병·의원, 시군보건소, 장애인시설 등 보건의료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렇게 장애인의료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의료인력 부족 사태, 파업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중단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센터 지정 과정에서 운영 책임 소재, 해결방안 등에 대해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인구 증가 및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의료차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의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그 목적과 추진 사업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